

의안번호	2210643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5. 6. 9.
추 계 번호	25B30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6조 (출입·검사 등)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제7호 ¹⁾ 에 따른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음. <u>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음(제4항 후단 신설)</u>	의무/재량 규정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를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음(제6항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6조 (출입·검사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동물보호법」 제86조(출입·검사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2. 상세 사유

- 반려동물 관련 허가·등록 영업장에 대한 점검 시 민간단체 참여 및 무허가·미등록 영업장에 대한 단속 실시(안 제86조제4항 후단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 현행법은 현재 허가제²⁾로 운영 중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및 등록제³⁾로 운영 중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에 대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표 1]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 현황(2024년)

(단위: 개소)

동물 생산업	동물 수입업	동물 판매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합계
2,010	122	3,114	83	604	5,603	10,172	1,857	23,565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25.5.

- 2)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 3)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 4) 「동물보호법」 제86조(출입·검사 등)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제7호에 따른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제70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가 및 등록 영업장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때 현행법 제4조제3항⁵⁾에 따른 민간단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및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점검단 구성 및 점검 방법, 단속 실시 주기 및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참고로, 현행법 제88조⁶⁾에 따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두고 있고,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보호관의 업무 실적 중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미등록·미신고·무허가영업 적발 실적이 33건이 있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실적은 주로 시민제보를 통해 사후적으로 적발한 사례이고, 개정안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수시적 단속과는 차이가 있음

5)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6) 「동물보호법」 제88조(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이하 "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7조(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8의2. (생략)
9.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시설·인력 등 허가 또는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14.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표 2] 지역별 동물보호관 및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현황(2024년)

(단위: 명, %, 건)

구분	보호관 (수)	지역 비율 (%)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실적						
			계	동물 소유자 의무 위반 (미등록 등)	동물관리 미흡	미등록· 미신고· 무허가영업	동물 학대·상해 ·유기	맹견관리 미흡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
전국	801	100.0	1,293	164	826	33	55	15	200
				12.7%	63.9%	2.6%	4.3%	1.2%	15.5%
서울	180	22.5	132	6	121	2	0	0	3
부산	48	6.0	65	0	55	1	5	0	4
대구	16	2.0	47	3	37	0	1	2	4
인천	30	3.7	126	4	72	3	3	1	43
광주	21	2.6	6	1	2	2	0	0	1
대전	33	4.1	131	114	13	3	0	0	1
울산	12	1.5	28	0	11	0	0	0	17
세종	2	0.2	5	1	2	0	1	0	1
경기	198	24.7	333	17	197	14	20	5	80
강원	43	5.4	44	0	36	1	0	1	6
충북	34	4.2	29	0	16	0	0	2	11
충남	27	3.4	75	2	57	0	1	0	15
전북	37	4.6	28	3	22	0	1	1	1
전남	22	2.7	32	2	30	0	0	0	0
경북	35	4.4	92	8	62	5	13	3	1
경남	50	6.2	62	0	48	1	7	0	6
제주	13	1.6	58	3	45	1	3	0	6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25.5.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 현황(2024년)⁷⁾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동물 생산업		동물 수입업		동물 판매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전국	23,565	29,305	2,010	3,132	122	152	3,114	3,969	83	378	604	880	5,603	7,379	10,172	11,429	1,857	1,986
서울	3,363	4,356	28	29	22	29	414	575	1	5	91	144	790	1,152	1,578	1,963	439	459
부산	1,590	1,732	44	55	15	15	206	238	3	3	41	45	433	494	776	809	72	73
대구	1,013	1,137	20	25	4	5	131	154	2	6	20	21	283	324	525	574	28	28
인천	1,471	1,782	87	133	13	14	184	192	2	20	30	41	327	431	668	788	160	163
광주	634	678	25	25	5	5	91	99	1	2	5	8	146	161	338	352	23	26
대전	656	848	43	58	1	1	111	158	—	—	9	12	161	206	306	379	25	34
울산	520	594	22	25	2	5	77	88	2	3	13	14	139	157	236	269	29	33
세종	105	118	8	14	—	—	10	13	2	6	1	1	28	28	55	55	1	1
경기	7,147	9,250	774	1,394	34	44	900	1,118	31	214	170	256	1,611	2,317	2,896	3,168	731	739
강원	728	865	60	79	3	3	91	104	3	8	34	53	194	240	309	338	34	40
충북	798	1,163	118	170	1	4	108	169	5	10	29	55	180	276	308	404	49	75
충남	1,142	1,520	230	365	6	10	167	268	4	10	26	40	255	347	398	419	56	61
전북	667	932	92	139	3	3	107	167	6	20	25	51	154	250	247	262	33	40
전남	696	843	106	143	—	—	95	128	4	13	34	47	159	180	259	290	39	42
경북	1,422	1,647	243	331	9	9	238	277	8	33	49	60	334	360	476	497	65	80
경남	1,308	1,448	101	133	4	5	163	188	9	25	18	23	312	325	655	695	46	54
제주	305	392	9	14	—	—	21	33	—	—	9	9	97	131	142	167	27	38

7)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25.5.

[참고자료 2] 연도별 반려동물 영업 현황(2024년)⁸⁾

(단위 : 개소, 명, 비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장묘업	업체수	57	63	68	74	83
	증감(전년비, %)	↑ 29.5	↑ 10.5	↑ 7.9	↑ 8.8	↑ 12.2
판매업	업체수	4,159	4,010	3,944	3,154	3,114
	증감(전년비, %)	↓ 0.5	↓ 3.6	↓ 1.6	↓ 20.0	↓ 1.3
수입업	업체수	120	122	125	94	122
	증감(전년비, %)	↑ 60.0	↑ 1.7	↑ 2.5	↓ 24.8	↑ 29.8
생산업	업체수	1,952	2,019	2,086	2,011	2,010
	증감(전년비, %)	↑ 15.5	↑ 3.4	↑ 3.3	↓ 3.6	—
전시업	업체수	664	653	638	541	604
	증감(전년비, %)	↑ 21.2	↓ 1.7	↓ 2.3	↓ 15.2	↑ 11.6
위탁관리업	업체수	4,406	4,802	5,034	4,820	5,603
	증감(전년비, %)	↑ 15.7	↑ 9.0	↑ 4.8	↓ 4.3	↑ 16.2
미용업	업체수	7,271	8,222	8,868	8,404	10,172
	증감(전년비, %)	↑ 14.5	↑ 13.1	↑ 7.9	↓ 5.2	↑ 21.0
운송업	업체수	656	794	1,313	1,477	1,857
	증감(전년비, %)	↑ 42.9	↑ 21.0	↑ 65.4	↑ 12.5	↑ 25.7
합계	업체수	19,285	20,685	22,076	20,575	23,565
	증감(전년비, %)	↑ 12.4	↑ 7.3	↑ 6.7	↓ 6.8	↑ 14.5

8)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25.5.